

**서울특별시마포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
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2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마포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외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외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2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